#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78

발의연월일: 2025. 2. 19.

발 의 자:김종민·임미애·복기왕

천하람 • 윤호중 • 이재관

이수진 · 문대림 · 이인영

장철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업무 등과 세제상의 지원을 규정하여 벤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투자계약에 대한 별다른 제약은 두지 않아 최근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투자금에 대한 상환권을 투자계약에 따라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시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을 금지하되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도 신기술사

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투자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 법률 제 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제3자에게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공된 정보 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2. 투자계약에서 정한 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 3.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지분을 처분한 경우
- 4. 그 밖에 투자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8조제3항제3호 중 "제45조를"을 "제45조제1항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자 연대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생략) | 제45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현행 제목 외의  |
| <신 설>                      | 부분과 같음)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제3자에 게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 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br>약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공<br>된 정보가 거짓으로 확인된<br>경우   |
|                            | 2. 투자계약에서 정한 자금의 사용 용도를 위반한 경우 3. 투자계약을 위반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계약사항을 위 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

제58조(과징금) ①・② (생 략)

-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 2. (생략)
- 3.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u>제45</u><u>조를</u> 위반한 경우
- 4. (생 략)
- ④ ~ ⑨ (생 략)

| 근 | 정하는       | 경우                          |
|---|-----------|-----------------------------|
| ᅩ | ^성 OF 1 - | $^{\prime}$ d $^{\prime}$ T |

| 제58조(과징금) | 1.2 | (현행과 |
|-----------|-----|------|
| 같음)       |     |      |

| (3) | <br> | <br> |  |
|-----|------|------|--|
|     | <br> | <br> |  |
|     | <br> | <br> |  |
|     | <br> | <br> |  |
|     | <br> |      |  |

- 1. 2. (현행과 같음)
- 3. -----<u>제45</u> <u>조제1항을</u>----
- 4. (현행과 같음)
- ④ ~ ⑨ (현행과 같음)